

## 준비서면

**사건**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서울고법 민사 제2부 나, 박홍우 부장판사)  
**원고** 김명호,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집: 02-813-8913, 휴대폰:010-5590-8913)  
**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이사장 권이혁

위 사건 심리에, 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77다300\(대법원 1977. 9. 28\)](#)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을 인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1. 재임용제도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판결
2. 최초로 재임용 관련 사립학교법 취지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유일하게 **합법적인** 판결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해석한, 86다카2622를 비롯한, 지난 20년간의 대법원 판결들과 2006. 3. 9. 선고된 2003재다262는,

법률해석 변경할 경우,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을 위반한, 위법 판결인 것입니다. (갑 제 28호증,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

게다가, 2003재다262에서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조문만을 왜곡 해석한 위헌적 판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 헌법소원 대상 사유

가. 양승태 대법관(주심)은, 오로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

3항 자체 만을 인용하고, “임기 만료된 교수는 교수지위를 상실한다”고 판시

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그 자체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난 법조문

[헌재 위헌 결정(2000헌바26)의 주문]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3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다. 위헌법률을 적용하여 국민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3.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 5개 단체의, 대법원 판례 77다300 재 부각 및, 지난 20년 간의 대법원의 무차별한 교수지위 불법박탈에 대한 대법원의 과거사 반성 촉구 성명서(갑 제38호증)
4. 법사위 최재천 의원의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사건에 드러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갑 제29호증)
5.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그에 따른 헌재결정(2000헌바26) 취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임명권자의 자의적 처분에 의한, 교원지위 불법박탈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판결이라는 점(갑 제28호증, 갑 제

38호증)

## 결론

(2005년 11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성명서 및 관련 기사들로부터도 밝혀졌듯이(갑 제 39호증),

원고의 재임용탈락은, (법원 판결에 의한 확인 공식절차만 남은)입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입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신속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방법

1. 갑 제38호증: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성명서와 언론 기사(“국 공립대 교수는 재임용, 사립학교는 왜 안돼?”, 대자보, 2006. 3. 8)

1. 갑 제39호증 김명호 교수 복직을 위한, 5개 단체 기자회견 성명서와 언론 기사들(2005년 11월 2자, 11월 7일자)

2006년 4월 5일

위 원고 김명호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tocourt.htm>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